

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제출일 : 2025. 1.

1. 제안이유

-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 확대(안 제3조)
- 관련법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라 용어 일괄 정비(안 제2조~제5조)
 - ‘수화, 수화통역사, 수화통역전용 스크린’
 - ‘한국수어, 한국수어 통역사,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’
-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(안 제4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를 설치하여, 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복지를 증진하며, 관련법인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라 ‘수화’의 명칭을 ‘한국수어’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